

[별표 5] <개정 2012.5.2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100	100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100	100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100	100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100	100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100	100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	100	100
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100	100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100	100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 중 가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50	50
---	----	----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	100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00	100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100	100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100	100
마.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	100	100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00	100
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100	100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0	100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0	100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타.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50	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50	50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50	50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0	50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	0	50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 른 농도	100	100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의 시설용지	100	100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 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 공도서관	100	100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100	100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 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 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4) 축산시설	100	100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100	100
사.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 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100	100
아. 「농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제2호가목에	50	100

따라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자. 광물의 채굴	0	100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0	100
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시설봉안시설을 말한다)	0	100
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0	100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0	100
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50	50
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50	50
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 비고

1. 제1호과목의 공용·공공용시설 중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제1호과목의 공용·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2. 제2호과목·하목·거목, 제3호너목·더목의 지역·지구·구역에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지구·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3. 제3호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바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한 후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